

거치식예금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	2015.10.05	판매 중	적용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제1조 가입대상: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해당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기존 사항 정비 및 신규 사항 추가
2	제2조 가입금액: 제한 없음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3	제3조 예치통화: 원화	제3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기존 사항 정비 및 신규 사항 추가 - 구약관 제4조 및 제7조를 개정약관 ①, ②,

		<p>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p> <p>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단,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사유로 인해 만기일 이전에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p> <p>④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p>	<p>③항에 반영</p> <p>- ④항 신설</p>
4	제4조 이자지급방법: 만기 일시지급 식	<p>제4조 (만기 후 자동 재예치)</p> <p>① 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치를 신청하거나 만기일 전에 자동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적용이율을 제외한 직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재예치한다.</p> <p>② 자동 재예치한 예금의 이자율은 갱신일 은행이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p> <p>③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자동 재예치 신청이 가능하다.</p> <p>④ 자동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 갱신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된다.</p> <p>⑤ 자동 재예치 금액은 입금원금 또는 원리금 중 선택 가능하다.</p>	<p>기존 사항 정비</p> <p>- 구약관 제4조를 개정 약관 제3조</p> <p>①항에 반영</p> <p>- 구약관 제8조를 개정 약관 제4조에 반영</p>
5	제5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은행의 승낙을 받은 때는 가능하며 예금담보 대출도 가능합니다.	(삭제)	예금거리기 본약관 제14 조 (양도 및 질권설

			정)에 해당 내용 명시
6	제6조 일부해지: 불가능	(삭제)	원화정기에 금 상품설명 서 상 해당 내용 명시
7	<u>제7조 이율적용</u> <u>7-1 약정이율:</u>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 에 따라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 된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또는 만기 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u>7-2 중도해지 이율:</u> 예금주가 만기일전에 지급을 요청하 는 때에는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것 으로 봅니다. 이때 중도해지 하는 예 금의 이자는 입금 건별 입금일로부 터 지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중도해지 이율 산식을 적용 하여 계산합니다. <u>7-3 만기 후 이율:</u>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입금 건별 만기 후 경과 기 간에 대하여 은행의 만기 후 이율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삭제)	기존 사항 정비 - 구약관 제 7조1항, 2항, 3항을 각각 개정약관 제 3조1항, 3항, 2항에 반영
8	<u>제8조 재예치:</u> 1. 최초 신규 시 재예치를 신청하거 나 만기일 전에 재예치를 신청한 경 우에는 계약만료일에 적용이율을 제 외한 직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 건으로 재예치 합니다. 2. 재예치한 예금의 이자율은 갱신일 은행이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을 적	(삭제)	기존 사항 정비 - 구약관 제 8조를 개정 약관 제4조 에 반영

	<p>용합니다.</p> <p>3. 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재예치 신청이 가능합니다.</p> <p>4.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 갱신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됩니다.</p> <p>5. 재예치 금액은 입금원금 또는 원리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p>		
9	<p>알림</p> <p>1.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p>	(삭제)	원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상 해당 내용 명시

3. 담당부서명 : 개인금융업무부

거치식예금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단,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사유로 인해 만기일 이전에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 4 조 (만기 후 자동 재예치)

- ① 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치를 신청하거나 만기일 전에 자동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적용이율을 제외한 직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재예치한다.
- ② 자동 재예치한 예금의 이자율은 갱신일 은행이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 ③ 월 단위 또는 연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자동 재예치 신청이 가능하다.
- ④ 자동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 갱신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된다.
- ⑤ 자동 재예치 금액은 입금원금 또는 원리금 중 선택 가능하다.